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6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5. /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주민생활과장의 보직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됨에 따라 부서 편제 순서를 재정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생활과를 기획감사실 다음, 행정과 앞에 둠(안 제3조 제1항)
- 나. 주민생활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두고, 행정과장, 재무과장, 종합민원실장(이하생략)을 각각 순서대로 함(안 제3조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생략
- 나. 관련법령
 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4. 본 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 (실·과의 설치)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주민생활과, 행정과, 재무과, 종합민원실, 문화관광과, 지역경제과, 환경과, 녹지공원과, 해양수산과, 건설재난과, 도시개발과, 특구지원과를 둔다.

② 실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

1. 기획감사실장
가 ~ 자(현행과 같음)
2. 주민생활과장
가 ~ 파(현행과 같음)
3. 행정과장
가 ~ 파(현행과 같음)
4. 재무과장
가 ~ 마(현행과 같음)
5. 종합민원실장
가 ~ 차(현행과 같음)
6. 문화관광과장 이하 현행과 같음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제3조 (실·과의 설치)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두고 행정과·재무과·종합민원실·주민생활과·문화관광과·지역경제과·환경과·녹지공원과·해양수산과·건설재난과·도시개발과·특구지원과를 둔다.</u></p> <p><u>②실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장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행정과장</u> 가. ~ 파. (생략) 3. <u>재무과장</u> 가. ~ 마. (생략) 4. <u>종합민원실장</u> 가. ~ 차. (생략) 5. <u>주민생활과장</u> 가. ~ 파. (생략) 6. <u>문화관광과장(이하 생략)</u> 	<p><u>제3조 (실·과의 설치)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주민생활과, 행정과, 재무과, 종합민원실, 문화관광과, 지역경제과, 환경과, 녹지공원과, 해양수산과, 건설재난과, 도시개발과, 특구지원과를 둔다.</u></p> <p><u>②실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장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주민생활과장</u> 가. ~ 파. (생략) 3. <u>행정과장</u> 가. ~ 파. (생략) 4. <u>재무과장</u> 가. ~ 마. (생략) 5. <u>종합민원실장</u> 가. ~ 차. (생략) 6. -----(이하 현행과 같음)